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안내)」
2. 공고기간: 2020.09.10. ~ 2020.09.23.
3. 당 사 자: 농업회사법인 (주) 성문 대표 정온숙(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
4. 공고내용
 - 가. 청문실시 통지
 - 1) 청문일시: 2020. 10. 15.(목) 15:00
 - 2) 청문장소: 목포교도소 청사 소회의실
 - 3) 주재자: 목포교도소 계약심의위원회
 - 나. 의견제출 통지
 - 1) 제출처: 목포교도소 복지과
 - 2) 전자우편 주소 : bk0701@korea.kr
 - 3) 제출기한: 2020. 10. 14.까지
5. 근거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교도소 복지과(☎ 061-288-7152 / 담당자 임병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목 포 교 도 소 장





목포교도소



수신 농업법인회사 (주)성문 대표 정은숙(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안내)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관련입니다.
 2. 우리 교도소에서 발주하여 2020.06.23. 귀사와 체결한 "목포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감자등 55종)구매" 계약건 관련하여 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중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 청문일시 : 2020.10.15.(목) 15:00
 - 나. 청문장소 : 목포교도소 청사 소회의실
 - 다. 참석대상 : 농업법인회사 (주)성문 대표 정은숙
- ※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반드시 위임장 지참 (인감증명 제출)
 -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만 제출 가능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목 포 교 도 소 장



교감 임병관 복지과장 김복협 소장 2020. 9. 2. 김춘오

협조자

시행 복지과-2491 (2020. 9. 2.) 접수

우 58574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복지과 /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61-288-7152 팩스번호 061-285-0999 / bk0701@moj.go.kr / 비공개(5,6)

청렴, 우리 모두의 품격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시 행 일 : 2020.09.02.

수 신 자 : 농업회사법인 (주)성문 대표 정온숙(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농업법인회사 (주) 성문 대표 정온숙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 교도소에서 발주하여 2020.06.23. 체결한 “목포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등 55종) 구매”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납품)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목포교도소	부서명	복지과	담당자	교감 임병관
	주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전화번호	061-288-7152
	일시	2020년 10월 15일 15시부터 16시까지			장소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목포교도소 계약심의위원회			
성명		상동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61-288-71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교 도 소 장

(붙임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20.09.02.

수 신 자 : 농업회사법인 (주)성문 대표 정온숙(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농업법인회사 (주) 성문 대표 정온숙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 교도소에서 발주하여 2020.06.23. 체결한 “목포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등 55종) 구매”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납품)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목포교도소	부서명	복지과	담당자	교감 임병관
		주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전화번호	061-288-7152
		전자우편 주소	bk0701@korea.kr			팩스번호	061-285-0999
	제출기한		2020년 10월 14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61-288-71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교 도 소 장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